

부속서 III  
서비스에 대한 유보 및 비합치 조치 목록

인도네시아

## 목록 가

### 주해

1. 이 목록은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인도네시아의 기존 조치를 규정한다.

가. 제8.4조(내국민 대우)

나. 제8.5조(시장접근)

다. 제8.6조(최혜국 대우), 또는

라. 제8.11조(현지주재)

2. 각 목록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 분야**는 유보된 구체적인 하위 분야를 지칭한다.

다. **산업 분류**는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열에 언급된 경우, 다음에 따라 비합치 조치의 적용 대상이 되는 활동을 지칭한다.

1) 잠정 중앙상품분류에서 사용되는 잠정 CPC 코드(통계문서시리즈 M No. 77, 국제 경제사회국, 국제연합 통계사무소, 뉴욕, 1991), 또는

2) 2015년 인도네시아표준산업분류(Klasifikasi Baku Lapangan Usaha Indonesia/KBLI).

- 라. **정부 수준**은 열거된 조치를 유지하는 정부 수준을 나타낸다.
- 마. **의무의 유형**은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에 따라, 열거된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에 언급된 의무를 명시한다.
- 바. **조치내용**은 유보된 비합치 조치를 규정한다.
- 사. **조치근거**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근거”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3. 제8.11조(현지주재)에 대하여 유보하는 유보항목은 제8.4조(내국민 대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으나 제8.4조 (내국민 대우)에 대한 유보로도 간주된다.
4.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에 따라, 유보항목의 **의무의 유형**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내용** 요소에 적시된 비합치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5.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목록 나의 유보항목 4부터 9까지에 명시된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유보항목은 이 목록에 명시된 하위 분야의 서비스의 공급에 적용된다.

1	분야	:	전문직 서비스
	하위 분야	:	법률 서비스(CPC 861) 가. 외국법 및 국제법에 관한 자문 서비스만 가능하다. 나.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문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1)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도네시아 법정에서 법적 대리 또는 법적 절차 수행 2) 공증 활동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조치내용	:	<u>서비스 무역</u> 외국 법무법인 서비스 공급자의 상업적 주재는 금지된다.
	조치근거	:	2003년 변호사에 관한 법 제18호

2	분야	: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하위 분야	:	<p>가. 도시간 배달 및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외한 우편 서비스(CPC 75111 및 CPC 75112) (2015년 인도네시아표준산업분류, 코드 53102 - 상업적 우편)</p> <p>나. 도시간 배달 및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외한 쿠리어 서비스(CPC 75121) (2015년 인도네시아표준산업분류, 코드 53102 - 상업적 우편)</p>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조치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외국인 서비스 공급자는 외국인 지분참여가 49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인도네시아 우편 서비스 공급자 오직 1 곳과의 합작투자를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편 또는 쿠리어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에 상업적 주재를 설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합작투자 파트너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완전하게 소유해야 한다.</p> <p>합작투자는 국제공항이나 항만을 보유하는 주도(州都)에서만 운영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 도시 간 우편 및 쿠리어 서비스의 제공은 금지된다.</p>
	조치근거	:	2009년 우편에 관한 법 제38호

3	분야	:	해상 운송 서비스
	하위 분야	:	가. 국제 여객 운송(CPC 7211) 나. 국제 화물 운송(CPC 7212)
	정부 수준	: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조치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외국인 서비스 공급자는 외국인 지분참여가 49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투자를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 여객이나 화물 해상 운송을 위하여 인도네시아에 상업적 주재를 설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p> <p>합작투자는 인도네시아 국민인 선원이 승선하고 최소 5,000 총톤수인 한 척 이상의 인도네시아 국적 선박을 운영해야 한다.</p> <p>외국 해운 기업은 국제 무역에 개방된 항구도시 및 특수 항구<sup>1</sup> 착발 국제 여객 운송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 해운 기업 또는 해운대리기업을 총대리점으로 지정하도록 요구된다.</p>
	조치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 년 해상법에 관한 법 제 17 호</li> <li>- 2011 년 정부 규정 제 22 호에 의하여 개정된 2010 년 해상 운송에 관한 정부 규정 제 20 호</li> <li>- 2016 년 자본 투자 금지 사업 분야 및 조건부 개방 사업 분야 목록에 관한 대통령 규정 제 44 호</li> <li>- 2017 년 통상부 장관 규정 제 82 호 제 2 차 개정에 관한 2018 년 통상부 장관 규정 제 80 호에 의하여 개정된 2017 년 해상 운송의 이용 및 특정 상품의 수출입을 위한 국가보험에 관한 조항에 관한 통상부 장관 규정 제 82 호</li> </ul>

<sup>1</sup> 서비스 공급 시점에 일반적 법과 규정에 따라 국제 무역에 개방된 항구도시 및 특수 항구.

4	분야	:	건설 서비스
	하위 분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층 및 이층 주택(CPC 51210)을 제외한 빌딩 건설업(CPC 512)</li> <li>2) 토목 관련 건설업(CPC 513)</li> <li>3) 조립식 건축물의 조립 및 시공(CPC 514)</li> <li>4) 설치 작업(CPC 516)</li> <li>5) 빌딩 완성 및 마무리 작업(CPC 517)</li> <li>6) 현장 조사 작업(CPC 51110)과 현장 조성 및 정리 작업(CPC 51113)을 제외한 건설 현장에서의 사전 시공 작업(CPC 511)</li> <li>7) 전문 공사업 (CPC 515)</li> <li>8) 운영자를 동반하는 건축이나 토목 공사의 건설 또는 해체용 장비와 관련된 임대 서비스(CPC 518)</li> </ol>
	정부 수준		중앙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조치내용	:	<u>서비스 무역</u> 중앙 정부 수준에서 기존의 모든 불합치 조치
	조치근거	:	중앙 정부 수준에서 기존의 모든 불합치 조치

## 목록 나

### 주해

1. 이 목록은 제8.8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인도네시아가 기존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야, 하위 분야 및 활동을 규정한다.

가. 제8.4조(내국민 대우)

나. 제8.5조(시장접근)

다. 제8.6조(최혜국 대우), 또는

라. 제8.11조(현지주재)

2. 각 목록 유보항목은 적용 가능한 경우,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 분야**는 언급된 경우, 유보된 구체적인 하위 분야를 지칭한다.

다. **산업 분류**는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열에 언급된 경우, 다음에 따라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활동을 지칭한다.

- 1) 잠정 중앙상품분류에서 사용되는 잠정 CPC 코드(통계문서 시리즈 M No. 77, 국제 경제사회국, 국제연합 통계사무소, 뉴욕, 1991). 개별 CPC 목록에 대한 \*\*의 출현은 명시된 서비스가 CPC번호가 적용되는 전체 활동범위의 일부만을 구성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2) 2015년 인도네시아표준산업분류(Klasifikasi Baku Lapangan Usaha Indonesia/KBLI). 또는

3) W 120은 서비스분야별분류표(1991년 7월 10일자 MTN.GNS/W/120)를 지칭한다.

라. **의무의 유형**은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에 따라, 유보항목에 열거된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활동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에 언급된 의무를 명시한다. 그리고

마. **유보내용**은 유보가 적용되는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활동의 범위 또는 성격을 규정한다.

3. 제8.11조(현지주재)에 대하여 유보하는 유보항목은 제8.4조(내국민 대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으나, 제8.4조(내국민 대우)에 대한 유보로도 간주된다.

4.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에 따라, 유보항목의 **의무의 유형**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 분야 및 활동에 적용되지 않는다.

5. 유보항목의 해석에서,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모든 분야를 규정하는 유보항목이며 그 유보항목에 “모든 분야” 라고 기재된 경우, 그러한 유보항목은 목록 가와 이 목록의 부록(금융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기재된 분야를 포함하여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7. 금융 서비스 무역에 관한 또는 그에 관련된 약속은 제8장(서비스 무역), 부속서 8-가(금융 서비스)에 따라, 그리고 이 목록의 부록(금융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규정된 제한, 조건 및 자격에 따라 행해진다.

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2조(적용범위) 제3항라호에 따라, 해상 운송 서비스의 연안운송은 이 유보목록의 약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분야	: 모든 분야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p data-bbox="635 389 799 427">: <u>서비스 무역</u></p> <p data-bbox="635 465 1445 613">인도네시아는 다음에 관한 약속을 제외하고 제 8.4 조(내국민 대우), 제 8.5 조(시장접근)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 data-bbox="730 669 1262 707">가. 목록 가에 명시된 분야 및 하위 분야</p> <p data-bbox="730 779 1445 853">나. 이 목록의 유보항목 10부터 94까지에 명시된 하위 분야</p> <p data-bbox="730 891 1445 965">다. 이 목록의 부록(금융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명시된 하위 분야</p> <p data-bbox="730 1003 1445 1308">라. 이 목록의 부록(금융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약속 안함” 으로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유보목록의 목록 가, 이 목록의 유보항목 10부터 94, 그리고 이 목록의 부록(금융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명시된 분야 및 하위 분야에 대하여 제8.1조(정의)리호2목에 정의된 해외 소비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 그리고</p> <p data-bbox="730 1346 1445 1532">마. 부속서 IV 의 인도네시아 양허표(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명시된 대로 제8.1조(정의)리호4목에 정의된 인도네시아 영역에서의 당사자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p> <p data-bbox="635 1576 1337 1615">그에 규정된 기간, 제한, 조건 및 자격을 전제로 한다.</p>

2	분야	: 모든 분야
	의무의 유형	: 최혜국 대우(제 8.6 조)
	유보내용	<p>: <u>서비스 무역</u></p> <p>인도네시아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서명된 모든 국제 협정에 따라 어떠한 서비스 공급자에게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이 목록의 제 8.6 조(최혜국 대우)에 관한 그 밖의 관련 유보항목을 조건으로 이 유보목록의 목록 가에 열거된 하위 분야에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sup>2</sup>, 인도네시아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에 서명된 모든 양자간 또는 다자간 국제 협정에 따라 어떠한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목록 가에 열거되지 않은 하위 분야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 후에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회원국 외의 다른 국가와 더 많은 특혜 대우를 부여하는 협정을 체결할 경우, 인도네시아는 다른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위의 협정에 따라 제공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이 유보목록에 통합하기 위한 협상을 고려할 것이다.</p> <p>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다음의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의 발효일 후에 서명된, 모든 아세안 회원국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아세안 협정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에 부여하는 경우</p> <p>나. GATS 제2조제3항이 적용되는 한도에서 인접국에게 부여된 이점과 관련하여 부여하는 경우, 그리고</p> <p>다.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모든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 협정에 따라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경우</p>

<sup>2</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8.6 조(최혜국 대우)는 목록 가에 열거된 분야에 대하여 이 목록에 유보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항공</li><li>2) 수산, 또는</li><li>3) 해난구조를 포함하는 해상 사안</li></ol>
--	--	--	---

3	분야	: 금융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 <sup>3</sup>
	의무의 유형	: 현지주재(제 8.11 조)
	유보내용	<p>: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국경 간 서비스 공급<sup>4</sup>의 조건으로 다른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신의 영역에서 대표 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거나 거주자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어떠한 기존의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이 협정의 발효 후에 채택되고 이 유보목록의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 관련된 제 8.11 조(현지주재)를 위반할 모든 비합치 조치는 기존의 비합치 조치로 간주되며 제 8.8 조(비합치 조치 목록)제 1 항의 적용대상이다.</p> <p>위의 항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다른 당사자의 통신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신의 영역에서 대표 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거나 거주자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sup>3</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8-가(금융 서비스)의 제 2 조제 4 항에 합치하여 이 유보항목은 금융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다.

<sup>4</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이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상업적 주체를 통한 한쪽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서비스의 공급을 말한다.

4	분야	: 모든 분야
	의무의 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p data-bbox="730 353 890 387">: <u>서비스 무역</u></p> <p data-bbox="730 432 1374 539">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ol data-bbox="791 600 1430 1003"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791 600 1430 824">1)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의 상업적 주체가 목록가와 이 목록에 달리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합작투자 또는 대표 사무소 형태이며, 합작투자는 유한책임기업(Perseroan Terbatas) 형태일 것이다. 그리고</li> <li data-bbox="791 898 1430 1003">2) 외국 파트너들이 소유할 수 있는 유한책임기업(Perseroan Terbatas)의 지분참여는 49페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li> </ol>

5	분야	: 모든 분야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유보내용	<p>: <u>서비스 무역</u></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비거주 납세자가 특히 다음의 소득을 인도네시아 원천으로부터 얻는 경우 20퍼센트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될 것이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자</li> <li>2) 로열티</li> <li>3) 배당금, 또는</li> <li>4) 인도네시아에서 수행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li> </ol> <p>라.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합작투자기업은 토지 사용권(Hak Guna Usaha)과 건축권(Hak Guna Bangunan)을 보유할 수 있으며 토지와 자산을 임대 또는 리스할 수 있다.</p>

6	분야	:	모든 분야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가 GATS 에 따라 약속한 분야와 하위 분야를 제외하고,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합작투자가 100 억 루피아<sup>5</sup>를 초과하는 총투자액(토지와 건물은 제외)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

<sup>5</sup> 여기에 기재된 금액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저해하지 않는다.

7	분야	:	모든 분야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제8.4조(내국민 대우)는 투자 시행 허가 <sup>6</sup> 의 주(provincial) 수준 <sup>7</sup> 에서의 절차적 측면에 관련된 조치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

<sup>6</sup> 예시적 목적상, 이는 장소 허가 또는 건물 허가를 포함할 수 있다.

<sup>7</sup>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주 수준”이란 지역 정부 수준을 말한다.

8	분야	:	모든 분야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인도네시아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인도네시아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의 보호, 그리고</p> <p>나. GATS에 따른 인도네시아의 약속에 합치하는 한도에서의 영주권자에 대한 규율</p>

9	분야	: 모든 분야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그러한 사업이 공공전자시스템 운영자의 맥락에서 정부 당국을 위하여 그리고 그를 대신하여 수행되는 경우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 수행의 조건으로 자신의 영역에서 컴퓨팅 시설을 관리, 사용이나 입지하도록 요구하고, 그리고 특정 정보가 인도네시아에서 저장되고 처리될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인도네시아는 그 조치가 적법절차를 따른 경우 민간전자시스템 운영자가 국내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 집행의 목적상 전자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영역에서 전략적 전자 데이터 <sup>8</sup> 의 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유지 및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 12.3 조(적용범위)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위의 이항은 인도네시아를 제 12.14 조(컴퓨터 설비의 위치) 및 제 12.15 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에 따른 자신의 의무로부터 면제하는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

<sup>8</sup>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전략적 전자 데이터”는 2019년 전자시스템 및 거래 운영에 관한 정부 규정 제 71 호에 규정된 대로이다.

10	분야	:	공동체, 사회 및 개인 서비스의 일부
	하위 분야	:	가. 기술 및 직업 중등 교육 서비스(전자, 자동차) (CPC 92230) 나. 언어 강좌 및 연수(CPC 924) 다. 축구 및 체스로 한정한다(CPC 92900) 라. 관광 자문 서비스(CPC 91136)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위 하위 분야의 서비스의 공급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1	분야	: 전문직 서비스
	하위 분야	: 가. 건축 서비스(CPC 8671) 나. 엔지니어링 서비스(CPC 86721, 86725, 86726 을 제외한 CPC 8672) 다.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CPC 8673) 라. 도시계획 서비스(CPC 86741) 마. 경관건축 서비스(CPC 86742)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다음의 형태로 한정하는 상업적 주재.  1) 인도네시아에서의 대표 사무소 설립을 통한 공동 운영. 대표 사무소 허가는 3년간 유효하며 연장이 가능하다. 또는  2) 외국 상업적 주재에 관한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합작투자회사.  나. 외국인이 소유하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참여는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다.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허가 요건은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 가능한 요건과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라.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는 첨단 기술을 이용하거나 고위험 또는 고자본인 프로젝트에 관련된 서비스만을 제공한다. 첨단 기술, 고위험 및 고비용의 기준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점에 일반적인 법과 규정에 따를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경관건축 서비스(CPC 86742)의 제 8.1 조(정의)러호 2 목 및 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2	분야	:	전문직 서비스
	하위 분야	:	엔지니어링 관련 상담 및 자문 서비스(CPC 86721)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에서의 대표 사무소를 통한 공동 운영 형태의 상업적 주재를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국내 파트너는 인도네시아 컨설턴트 협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13	분야	:	전문직 서비스
	하위 분야	:	제철, 오일 및 가스, 가스 터빈 산업으로 한정하는 산업 공정 및 생산을 위한 엔지니어링 설계 서비스(CPC 867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형 및 형판(압력 주조, 단조, 스탬핑 등)</li> <li>나. 분말야금</li> </ul>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8.5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합작투자의 국내 파트너가 인도네시아 컨설턴트 협회의 회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합작투자 형태의 상업적 주체를 통한 공급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4	분야	:	전문직 서비스
	하위 분야	:	제조 공장의 자재 흐름, 장비 배치, 자재 처리 시스템, 공정 및 공정제어(컴퓨터 기술이 통합될 수 있다)로 한정하는 산업 공정 및 생산을 위한 엔지니어링 설계 서비스(CPC 86725**)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8.5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합작투자의 국내 파트너가 인도네시아 컨설턴트 협회의 회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합작투자 형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5	분야	: 전문직 서비스
	하위 분야	: 가. A 급 및 B 급 병원으로 설립 · 통합된 등록 의료기관에서의 전문 의료 서비스 클리닉(CPC 93122) 나. A 급 및 B 급 병원으로 설립 · 통합된 등록 의료기관에서의 전문 치과 서비스 클리닉(93123)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1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외국인이 소유하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참여는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나. 인도네시아인 의료 전문인력의 가용성을 조건으로만 외국인 의료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다. 전문 의료 서비스의 경우 A급이나 B급 병원 소유의 부지에, 또는 하위 전문 의료 서비스의 경우 B급 병원 소유의 부지에 설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라. 경영은 병원과 통합된다.

16	분야	:	전문직 서비스
	하위 분야	:	A 급 및 B 급 병원으로 설립·통합된 등록 기관에서의 전문 요양 서비스(CPC 93191)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1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외국인이 소유하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참여는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p> <p>나. 의료 전문인력은 인도네시아 국민이다. 그리고</p> <p>다. 마나도와 마카사르를 제외한 동인도네시아 지역의 주도(州都)로 설립이 제한된다.</p>

17	분야	: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하위 분야	: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에 관련된 자문 서비스(CPC 841)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1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인도네시아에서의 대표 사무소를 통한 공동 운영 요건의 형태일 것을 요구하고 국내 파트너가 인도네시아 컨설턴트 협회의 회원이어야 한다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18	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
	하위 분야	:	CPC 84210 만을 위한 소프트웨어 시행 서비스(CPC 842)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할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인도네시아인 개인이나 인도네시아인 지배 회사 또는 그 모두가 참여하는 유한책임기업(Perseroan Terbatas)의 형태로 현지에 설립된 합작투자기업을 통해야만 한다.</p> <p>나. 자본가치 1천억 루피아 이상, 그리고 투자가치 150억 루피아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된다. 그리고</p> <p>다. 국내 파트너는 인도네시아 컨설턴트 협회의 회원이어야 한다.</p>

19	분야	: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하위 분야	:	고급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만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CPC 844)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1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할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인도네시아인 개인이나 인도네시아인 지배 회사 또는 그 모두가 참여하는 유한책임기업(Perseroan Terbatas)의 형태로 현지에 설립된 합작투자회사를 통해야만 하고 국내에 데이터를 소유한 합작투자이다.</p> <p>나. 자본 가치 1천억 루피아 이상, 그리고 투자 가치 150억 루피아 이상을 보유하는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된다. 그리고</p> <p>다. 국내 파트너는 인도네시아 컨설턴트 협회의 회원이어야 한다.</p>

20	분야	: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하위 분야	:	컴퓨터를 포함하는 사무기계류 및 장비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서비스(CPC 845)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1 목 및 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위의 항에 관련된 이 협정의 발효 후에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비합치 조치는 기존의 비합치 조치로 간주되며 제 8.8 조(비합치 조치 목록)제 1 항의 적용대상이다.</p>

21	분야	: 연구개발 서비스
	하위 분야	: 산업 활동으로 한정하는 학제간 연구개발(CPC 853)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p data-bbox="730 456 887 495">: <u>서비스 무역</u></p> <p data-bbox="730 533 1433 719">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 data-bbox="788 763 1433 835">가. 합작투자의 국내 파트너는 인도네시아 컨설턴트 협회의 회원이어야 한다.</p> <p data-bbox="788 880 1433 987">나.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허가 요건은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 가능한 요건과 다를 수 있다.</p> <p data-bbox="788 1032 1433 1178">다.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인도네시아 연구기관(고등 교육, 정부, 기업, 비영리 사설) 소속 연구원이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p> <p data-bbox="788 1223 1433 1368">라.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허가 부여 시 신청 당시의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연구의 목표, 영역 및 기간에 대한 평가의 적용을 받을 것이다.</p>

22	분야	: 연구개발 서비스
	하위 분야	: 외국어로 한정하는 언어학과 언어에 대한 연구 및 실험개발 서비스(CPC 85204)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p data-bbox="730 495 887 533">: <u>서비스 무역</u></p> <p data-bbox="730 571 1430 680">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1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 data-bbox="730 723 1430 945">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인도네시아에서의 대표 사무소를 통한 공동 운영 요건의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 data-bbox="791 987 1430 1097">가.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허가 요건은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다를 수 있다.</p> <p data-bbox="791 1140 1430 1290">나. 인도네시아에서의 고등 교육 기관, 특히 PTN-BH(Perguruan Tinggi Negeri Berbadan Hukum)와의 파트너십 설립이 요구된다. 그리고</p> <p data-bbox="791 1332 1430 1482">다.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허가 부여시 신청 당시의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연구의 목표, 영역 및 기간에 대한 평가의 적용을 받을 것이다.</p>

23	분야	: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 또는 리스 서비스
	하위 분야	:	승무원을 동반하지 않는 선박 임대(CPC 83103)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외국인이 소유하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참여의 6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4	분야	: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 또는 리스 서비스(사업 서비스)
	하위 분야	: 비디오 테이프와 관련된 임대 서비스(CPC 83202)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1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외국인이 소유하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참여의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고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허가 요건이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 가능한 요건과 다를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5	분야	:	경영 자문 서비스
	하위 분야	:	가. 일반 경영 자문 서비스(CPC 86501) 나. 마케팅 경영 자문 서비스(CPC 86503) 다. 인적 자원 관리 자문 서비스(CPC 86504)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외국인이 소유하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참여의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6	분야	:	경영 자문 서비스
	하위 분야	:	건설을 제외한 프로젝트 경영 서비스(CPC 86601)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1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외국인이 소유하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참여의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고 국내 파트너가 인도네시아 컨설턴트 협회의 회원이어야 한다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27	분야	:	그 밖의 사업 서비스
	하위 분야	:	기술적 진단 서비스(CPC 86764)로 한정하는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CPC 8676)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고 국내 파트너가 인도네시아 컨설턴트 협회의 회원이어야 한다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8	분야	:	그 밖의 사업 서비스
	하위 분야	:	회의·포상·국제회의·전시회(MICE)로 한정하는 국제회의 서비스(CPC 87909)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9	분야	: 그 밖의 사업 서비스
	하위 분야	: 절도 조사 서비스(CPC 87301)로 한정하는 조사 및 경비 서비스(CPC 873)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1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외국인이 소유하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참여는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허가 요건은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요건과 다를 수 있다.

30	분야	:	그 밖의 사업 서비스
	하위 분야	:	사진 복원·복제·보정 서비스(CPC 87507)로 한정하는 사진 서비스(CPC 875)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파푸아 및 몰루카에서만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1	분야	:	그 밖의 사업 서비스
	하위 분야	:	제조업 부수 서비스(CPC 88411, 88412, 88421, 88422, 88423, 88430, 88442, 88460, 88491, 88492 를 제외한 CPC 884)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외국인이 소유하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참여는 33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리고</p> <p>나. 국내 파트너는 인도네시아 컨설턴트 협회의 회원이어야 한다.</p>

32	분야	:	그 밖의 사업 서비스
	하위 분야	:	금속 제품, 기계 및 장비 제조 부수 서비스(CPC 885)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인도네시아에서의 대표 사무소를 통한 공동 운영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자본가치가 100억 루피아 이상인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게만 적용된다. 그리고</p> <p>나. 국내 파트너는 인도네시아 컨설턴트 협회의 회원이어야 한다.</p>

33	분야	: 그 밖의 사업 서비스
	하위 분야	: 발전소 및 발전망 운영 관련 자문 서비스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배분 부수 서비스(CPC 887)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1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외국인이 소유하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참여의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4	분야	: 그 밖의 사업 서비스
	하위 분야	: 지진 데이터의 획득으로 한정하는 지질학 및 지구물리학 서비스 가. 인도네시아 에너지 서비스 분류 제안서에 따라 다음에 해당한다: 지진 데이터 획득(1A.1.4.1.1), 그리고 나. W 120 에 따르면 지진 데이터 획득은 다음에 해당한다: 지각조사 서비스에 대한 사업 서비스(CPC 86752)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인도네시아에서의 대표 사무소를 통한 공동 운영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35	분야	:	그 밖의 사업 서비스
	하위 분야	:	장비의 유지 및 보수(선박,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운송장비는 제외한다)(CPC 8861+8866)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외국인이 소유하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참여는 33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리고</p> <p>나. 국내 파트너는 인도네시아 컨설턴트 협회의 회원이어야 한다.</p>

36	분야	: 그 밖의 사업 서비스
	하위 분야	: 포장 서비스(CPC 876)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p>: <u>서비스 무역</u></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1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외국인이 소유하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참여는 7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리고</p> <p>나. 인도네시아 동부로 제한된다.</p>

37	분야	: 그 밖의 사업 서비스
	하위 분야	: 전화 응대 서비스(CPC 87903)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p>: <u>서비스 무역</u></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 (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외국인이 소유하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참여는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리고</p> <p>나.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허가 요건은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 가능한 요건과 다를 수 있다.</p>

38	분야	:	그 밖의 사업 서비스
	하위 분야	:	시장 조사 서비스(CPC 86401)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인도네시아에서의 대표 사무소를 통한 공동 운영 요건의 형태일 것을 요구하고 국내 파트너가 인도네시아 컨설턴트 협회의 회원이어야 한다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39	분야	:	통신 서비스 <sup>9</sup>
	하위 분야	:	가. 공중교환 전화 서비스(CPC 7521) 나. 원격 회의 서비스(CPC 75292) 다. 이동 전화 서비스(CPC 75213) 라. 인터넷 접속 서비스/지방 및 전국 무선호출 서비스(CPC 75291) 마. 공중전화 서비스/음성메일 서비스(CPC 7523) 바. 전자메일 서비스(CPC 75232)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외국인이 소유하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참여의 3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sup>9</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분야의 적용대상에 통신탑 건설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40	분야	:	통신 서비스 <sup>10</sup>
	하위 분야	:	가. 비디오텍스트 서비스(CPC 75229) 나. 파일 전송 서비스, 가정용 원격측정 경보,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경영정보 서비스(CPC 75299) 다. 컴퓨터 시간 공유 서비스(CPC 84330)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외국인이 소유하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참여는 3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나. 특정 주 또는 지역에서의 서비스의 공급은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한다.  다. 서비스는 폐쇄 이용자 그룹에만 제공된다. 그리고  라. 망 서비스 공급자는 그 밖의 망에 대한 연결이 금지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경 간 서비스의 공급은 허용된다.

<sup>10</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분야의 적용대상에 통신탑 건설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41	분야	:	통신 서비스 <sup>11</sup>
	하위 분야	:	전자적 데이터 교환(EDI) (CPC 7523**)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 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총 외국인 지분참여 요건을 70 퍼센트까지 허용하되, 49 퍼센트까지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통하고 나머지 비율은 그 밖의 메커니즘을 통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sup>11</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분야의 적용대상에 통신탑 건설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42	분야	:	통신 서비스 <sup>12</sup>
	하위 분야	:	가. 회선교환 공중 데이터 네트워크 서비스(CPC 7523**) 나. 패킷교환 공중 데이터 네트워크 서비스(CPC 7523**) 다. 민간전용회선 서비스(CPC 7522**+7523**) 라. 텔렉스 서비스(CPC 7523**) 마. 전신 서비스(CPC 7522) 바. 모사전송(CPC 7521** + 7529**) 사. 이동 전화 서비스(CPC 75213) 아. 전용망 서비스(CPC 75222) 자. 저장 및 전송, 저장 및 검색을 포함한 고도 또는 부가가치 모사전송 서비스(CPC 7523**) 차.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CPC 7523**) 카. 인터넷 접속 서비스/지방 및 전국 무선호출 서비스(CPC 75291) 타. 공중전화 서비스/음성메일 서비스(CPC 7523) 파. 전자메일 서비스 및 전자메일함(CPC 75232) 하. 비디오텍스트 서비스(CPC 75229) 거. 파일 전송 서비스, 가정용 원격측정 정보,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경영정보 서비스(CPC 75299) 너.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처리(거래 처리를 포함한다) (CPC 843**)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 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외국인이 소유하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참여의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sup>12</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분야의 적용대상에 통신탑 건설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43	분야	: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하위 분야	: 가.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제작(CPC 9611) 나.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배급 서비스(CPC 9611) 다. 영화 상영 서비스(CPC 9612)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체를 통한 공급이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외국인이 소유하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참여는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나.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허가 요건은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 가능한 요건과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다. 영화의 배급은 자바섬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할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영화 상영 서비스(CPC 9612)에 대한 제 8.1 조(정의)러호 1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44	분야	:	시청각 서비스
	하위 분야	:	음성 녹음 서비스(KBLI 592)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외국인이 소유하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참여는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리고</p> <p>나.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허가 요건은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 가능한 요건과 다를 수 있다.</p>

45	분야	: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하위 분야	: 가. 일층 및 이층 주택(CPC 51210)을 제외한 빌딩 건설업(CPC 512) 나. 토목 관련 건설업(CPC 513) 다. 조립식 건축물의 조립 및 시공(CPC 514) 라. 설치 작업(CPC 516) 마. 빌딩 완성 및 마무리 작업(CPC 517) 바. 현장 조사 작업(CPC 51110)과 현장 조성 및 정리 작업(CPC 51113)을 제외한 건설 현장에서의 사전 시공 작업(CPC 511) 사. 전문 공사업(CPC 515) 아. 운영자를 동반하는 건축이나 토목 공사의 건설 또는 해체용 장비와 관련된 임대 서비스(CPC 518)
	의무의 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최혜국 대우(제 8.6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할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다음의 형태로 한정하는 상업적 주재.  1) 인도네시아에 대표 사무소 설립을 통한 공동 운영. 대표 사무소 허가는 3년간 유효하며 연장이 가능하다. 또는  2) 외국 상업적 주재에 관한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합작투자회사. 그리고  나. 상업적 주재의 합작투자에서 외국인이 소유하는 지분참여는 5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46	분야	: 유통 서비스
	하위 분야	: 가. 식음료 및 담배 도매 서비스(CPC 6222) 나. 섬유, 의류 및 신발 도매 서비스(CPC 6223)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1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외국인이 소유하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참여는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나. 상호 필요, 상호 강화 및 상호 호혜의 원칙을 적절히 고려하여, 연수 및 개발과 함께 공급자 및 소매업자로서 매년 최소 100개의 인도네시아 중소기업과 협력할 의무를 지닌다.  다.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허가 요건은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 가능한 요건과 다를 수 있다.  라.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는 최소 면적이 5,000m <sup>2</sup>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허용된다.  마.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는 칼리만탄, 술라웨시, 누사 탕가라, 말루쿠 및 파푸아 섬의 주도(州都) 외곽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리고  바.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는 국가 무역 기업을 대리인, 단독 대리인, 유통업자 또는 단독 유통업자로 지정하도록 요구된다.

47	분야	:	유통 서비스
	하위 분야	:	다단계 마케팅으로 한정하는 직접 판매(KBLI 47999)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1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외국인이 소유하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참여는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p> <p>나.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허가 요건은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 가능한 요건과 다를 수 있다.</p> <p>다. 외국인 공급자는 제품 목록에 인도네시아산 제품을 포함하도록 요구된다. 그리고</p> <p>라. 인도네시아직접판매협회에 가입해야 한다.</p>

48	분야	: 유통 서비스
	하위 분야	: 프랜차이징(CPC 8929) 최소 면적 5,000m <sup>2</sup> 이상에서의 식음료 및 담배 도매 서비스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p>: <u>서비스 무역</u></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외국인이 소유하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참여는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p> <p>나.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는 최소 면적이 5,000m<sup>2</sup>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허용된다.</p> <p>다.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허가 요건은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 가능한 요건과 다를 수 있다.</p> <p>라.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는 칼리만탄, 술라웨시, 누사 탕가라, 말루쿠 및 파푸아 섬의 주도(州都) 외곽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허용되며 주도(州都) 외곽에 위치해야 한다.</p> <p>마.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는 국가 무역 기업을 대리인, 단독 대리인, 유통업자 또는 단독 유통업자로 지정하도록 요구된다. 그리고</p> <p>바. 상호 필요, 상호 강화 및 상호 호혜의 원칙을 적절히 고려하여, 연수 및 개발과 함께 공급자 및 소매업자로서 매년 최소한 100개 이상의 인도네시아 중소기업과 협력하도록 요구된다.</p>

49	분야	: 교육 서비스
	하위 분야	: 기술 및 직업 중등 교육 서비스(전자, 자동차) (CPC 92230)
	의무의 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p data-bbox="730 461 887 495">: <u>서비스 무역</u></p> <p data-bbox="730 535 1433 719">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791 763 1433 835">가. 학점, 프로그램 및 증명서에 관한 관련 기관 간 상호 인정 약정이 요구된다.</li> <li data-bbox="791 880 1433 952">나. 외국 교육 서비스 공급자는 국내 파트너와 파트너십을 설립해야 한다.</li> <li data-bbox="791 996 1433 1068">다. 외국어 강사는 인도네시아어를 구사하고 해당 외국어의 원어민이어야 한다.</li> <li data-bbox="791 1113 1433 1216">라. 외국 교육 서비스 공급자는 문화교육부의 인증 외국 교육 목록에 등재되어야 하며 그 국내 파트너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li> <li data-bbox="791 1261 1433 1408">마. 국내 파트너와 협력하는 외국 교육 서비스 공급자는 자카르타, 수라바야, 반둥, 욕야카르타 및 메단 시에 교육 기관을 개원할 수 있다.</li> <li data-bbox="791 1453 1433 1525">바. 상업적 주재는 야야산(재단) 형태로 설립된다.</li> <li data-bbox="791 1570 1433 1641">사. 교육자의 수는 최소 30퍼센트의 인도네시아인 교육자를 포함한다. 그리고</li> <li data-bbox="791 1686 1433 1789">아. 교육자 및 책임자를 제외한 피고용인의 수는 최소 80퍼센트의 인도네시아 국민을 포함한다.</li> </ul>

50	분야	: 교육 서비스
	하위 분야	: 기술 및 직업 고등 교육 서비스(폴리테크닉 기계 및 전기)(CPC 92310)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p data-bbox="730 495 887 528">: <u>서비스 무역</u></p> <p data-bbox="730 568 1430 752">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791 792 1430 864">가. 외국인이 소유하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참여는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li> <li data-bbox="791 904 1430 976">나. 학점, 프로그램 및 증명서에 관한 관련 기관 간 상호 인정 약정이 요구된다.</li> <li data-bbox="791 1016 1430 1088">다. 외국 교육 서비스 공급자는 국내 파트너와 파트너십을 설립해야 한다.</li> <li data-bbox="791 1128 1430 1200">라. 외국어 강사는 인도네시아어를 구사하고 해당 외국어의 원주민이어야 한다.</li> <li data-bbox="791 1240 1430 1357">마. 외국 교육 서비스 공급자는 문화교육부의 인증 외국 교육 목록에 등재되어야 하며 그 국내 파트너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li> <li data-bbox="791 1397 1430 1559">바. 국내 파트너와 협력하는 외국 교육 서비스 공급자는 자카르타, 수라바야, 반둥, 욕야카르타 및 메단 시에 교육 기관을 개원할 수 있다.</li> <li data-bbox="791 1599 1430 1671">사. 상업적 주재는 야야산(재단) 형태로 설립된다.</li> <li data-bbox="791 1711 1430 1783">아. 교육자의 수는 최소 30퍼센트의 인도네시아인 교육자를 포함한다.</li> <li data-bbox="791 1823 1430 1939">자. 교육자 및 책임자를 제외한 피고용인의 수는 최소 80퍼센트의 인도네시아 국민을 포함한다. 그리고</li> <li data-bbox="791 1980 1430 2007">차.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허가 요건은</li> </ul>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 가능한 요건과 다를 수 있다.
--	--	--	---

51	분야	: 교육 서비스
	하위 분야	: 가. 언어 강좌 및 연수로 한정하는 성인 교육 서비스(CPC 924) 나. 축구 및 체스로 한정하는 그 밖의 교육 서비스(CPC 92900)
	의무의 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학점, 프로그램 및 증명서에 관한 관련 기관 간 상호 인정 약정이 요구된다.  나. 외국 교육 서비스 공급자는 국내 파트너와 파트너십을 설립해야 한다.  다. 외국어 강사는 인도네시아어를 구사하고 해당 외국어의 원어민이어야 한다.  라. 외국 교육 서비스 공급자는 문화교육부의 인증 외국 교육 목록에 등재되어야 하며 그 국내 파트너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마. 국내 파트너와 협력하는 외국 교육 서비스 공급자는 자카르타, 수라바야, 반둥, 옥야카르타 및 메단 시에 교육 기관을 개원할 수 있다.  바. 상업적 주재는 야야산(재단) 형태로 설립된다.  사. 교육자의 수는 최소 30퍼센트의 인도네시아인 교육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아. 교육자 및 책임자를 제외한 피고용인의 수는 최소 80퍼센트의 인도네시아 국민을 포함한다.

52	분야	:	환경 서비스
	하위 분야	:	폐수 관리로 한정하는 폐수 서비스(CPC 9401)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외국인이 소유하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참여는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리고</p> <p>나.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허가 요건은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 가능한 요건과 다를 수 있다.</p>

53	분야	: 환경 서비스
	하위 분야	<p>가. 폐기물 처리 서비스(CPC 9402) 특정 지역에서 오일 슬러지 및 폐수은 처리를 위한 통합 유해 폐기물 처리 설비 서비스로 한정하는 고품 폐기물 처리 서비스. 제품은 신소재 또는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것이다.</p> <p>나. 폐기물 처리 서비스(CPC 9402) 광물 폐기물 및 석탄 비산화·저부회 폐기물 처리를 위한 현장 유해 폐기물 처리 설비 서비스로 한정하는 고품 폐기물 처리 서비스.</p>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p>: <u>서비스 무역</u></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외국인이 소유하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참여는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p> <p>나.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허가 요건은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 가능한 요건과 다를 수 있다. 그리고</p> <p>다. 서비스 공급자는 현대화된 고급 기술과 환경 안전성을 갖추어야 한다.</p>

54	분야	:	환경 서비스
	하위 분야	:	비유해 쓰레기 및 폐기물로 한정하는 폐기물 처리 서비스(CPC 94020)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1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고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허가 요건이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 가능한 요건과 다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55	분야	:	환경 서비스
	하위 분야	:	공중 위생 설비로 한정하는 위생 및 유사 서비스(CPC 9403)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8.4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외국인이 소유하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참여는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p> <p>나.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하는 신규 허가. 그리고</p> <p>다.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허가 요건은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 가능한 요건과 다를 수 있다.</p>

56	분야	:	환경 서비스
	하위 분야	:	<p>가. 대기오염 관리로 한정하는 배기가스 정화 서비스(CPC 9404)</p> <p>나. 환경에 대한 실험실 서비스로 한정하는 그 밖의 환경 보호 서비스(CPC 9409)(현행 환경법과 규정에 따라 환경 품질 파라미터를 검사 및 시험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갖춘 실험실)</p>
	의무의 유형	:	<p>내국민 대우(제 8.4 조)</p> <p>시장접근(제 8.5 조)</p>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외국인이 소유하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참여는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그리고</p> <p>나.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허가 요건은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 가능한 요건과 다를 수 있다.</p>

57	분야	:	환경 서비스
	하위 분야	:	식수로 한정하는 물 관리 <sup>13</sup> (KBLI 36001)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1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체를 통한 공급이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고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허가 요건이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 가능한 요건과 다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

<sup>13</sup> 물 관리는 소비자에게 식수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원으로부터의 표층수 정화, 물 터미널부터의 직접 물 공급, 물 탱크 운송에 관련된 일련의 공급 서비스 활동을 포함한다.

58	분야	: 보건 관련 및 사회 서비스
	하위 분야	: 250 개를 초과하는 병상을 제공하는 A 급 및 B 급 병원에서 전문의 및 세부전문의 의료 서비스를 갖춘 병원 서비스(CPC 9311)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할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외국인이 소유하는 지분참여의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투자 형태이며 승인은 제공되는 병원 서비스의 사회적 기능을 조건으로 한다.  나. 자격을 갖춘 인도네시아 국민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만 외국인 의료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다. 병원은 인도네시아인 의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이사회에 의하여 경영된다. 그리고  라. 외국 병원은 A 급 또는 B 급 병원의 전문 서비스 및 세부 전문 서비스를 위해서만 설립될 수 있다.

59	분야	:	그 밖의 보건의료 서비스
	하위 분야	:	침술 서비스(CPC 93191)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1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외국인이 소유하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참여는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p> <p>나. 구조적 수준에서의 보건 관리<sup>14</sup> 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맡는다. 그리고</p> <p>다. 자격을 갖춘 인도네시아 국민이 충분하지 않은 한도에서만 외국인 의료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p>

<sup>14</sup> “구조적 수준에서의 보건 관리” 는 2009 년 병원에 관한 법 제 44 호의 규율에 따른다.

60	분야	:	그 밖의 보건 서비스
	하위 분야	:	가금류 농장 자문 서비스로 한정하는 수의료 서비스(CPC 93209)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외국인이 소유하는 합작투에 대한 지분참여는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p> <p>나. 동물병원(Rumah Sakit Hewan)에서 운영된다. 그리고</p> <p>다.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허가 요건은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 가능한 요건과 다를 수 있다.</p>

61	분야	:	사회 서비스
	하위 분야	:	사회 서비스(CPC 933) 가. 노인 대상 사회복지서비스 나. 장애인 대상 사회복지서비스 다.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를 위한 사회복지 연수 및 교육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고 자격을 갖춘 인도네시아 국민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만 외국인 의료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62	분야	: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하위 분야	:	호텔 <sup>15</sup> (5성급 호텔로 한정한다)(CPC 64110)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할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허가 요건은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 가능한 요건과 다를 수 있다.</p> <p>나. 특정 주 또는 지역에서의 서비스의 공급은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한다. 그리고</p> <p>다.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는 지분참여의 100 퍼센트를 소유할 수 있다.</p> <p>위의 항에 관련된 이 협정의 발효 후에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비합치 조치는 기존의 비합치 조치로 간주되며 제 8.8 조(비합치 조치 목록)제 1 항의 적용을 받는다.</p>

<sup>15</sup> 5성급 호텔은 공중도덕, 종교, 안보 및 공공질서상의 이유로 카지노와 법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활동을 제외하고, 숙박, 식음료 설비 및 그 밖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이다.

63	분야	: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하위 분야	:	호텔 <sup>16</sup> (3성급 및 4성급 호텔로 한정한다)(CPC 64110)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할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허가 요건은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 가능한 요건과 다를 수 있다.</p> <p>나. 특정 주 또는 지역에서의 서비스의 공급은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한다. 그리고</p> <p>다.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는 지분참여의 100퍼센트를 소유할 수 있다.</p>

---

<sup>16</sup> 성급 호텔은 공중도덕, 종교, 안보 및 공공질서상의 이유로 카지노와 법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활동을 제외하고, 숙박, 식음료 설비 및 그 밖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이다.

64	분야	: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하위 분야	:	호텔 <sup>17</sup> (1성급 또는 2성급 호텔로 한정된다)(CPC 64110)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합작투자 형태이고 특정 주 또는 지역에서의 서비스의 공급이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sup>17</sup> 성급 호텔은 공중도덕, 종교, 안보 및 공공질서상의 이유로 카지노와 법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활동을 제외하고, 숙박, 식음료 설비 및 그 밖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이다.

65	분야	: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하위 분야	:	가. 모텔 숙박 서비스(CPC 64120) 나. 가구를 갖춘 숙소의 임대 서비스(CPC 64193)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국내 파트너는 인도네시아 중소기업(SMEs)이다. 그리고</p> <p>나. 특정 주 또는 지역에서의 서비스의 공급은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한다.</p>

66	분야	: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하위 분야	:	풀 레스토랑 서비스를 동반한 식사 제공 서비스(CPC 64210)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합작투자 형태이고 특정 주 또는 지역에서의 서비스의 공급이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위의 항에 관련된 이 협정의 발효 후에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비합치 조치는 기존의 비합치 조치로 간주되며 제 8.8 조(비합치 조치 목록)제 1 항의 적용을 받는다.</p>

67	분야	: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하위 분야	:	가. 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한 음료 제공 서비스(CPC 64310) 나.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하는 음료 제공 서비스(CPC 64320)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합작투자 형태이고 특정 주 또는 지역에서의 서비스의 공급이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68	분야	: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하위 분야	:	여행 대행 서비스로 한정하는 여행 알선 및 여행 대행 서비스(CPC 74710)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8.4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서비스 공급자가 최대 30 인의 여행업자인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69	분야	: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하위 분야	:	관광 가이드 서비스(CPC 74720)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 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70	분야	: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하위 분야	:	호텔(3성급, 4성급 및 5성급)을 포함하는 관광 리조트 <sup>18</sup> (해상 리조트 설비 및 호텔 경영은 제외한다)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과 특정 주 또는 지역에서의 서비스의 공급이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위의 항에 관련된 이 협정의 발효 후에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비합치 조치는 기존의 비합치 조치로 간주되며 제 8.8 조(비합치 조치 목록)제 1 항의 적용을 받는다.</p>

---

<sup>18</sup> 관광 리조트는 공중도덕, 종교, 안보 및 공공질서상의 이유로 카지노와 법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활동을 제외하고, 호텔, 해상 리조트, 골프 코스, 문화적 개방 무대 및 그 밖의 시설과 같이 관광객에게 필요한 시설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어진 지역이다.

71	분야	: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하위 분야	:	국제 호텔 운영자(CPC 91135)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 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과 특정 주 또는 지역에서의 서비스의 공급이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72	분야	: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하위 분야	:	관광 자문 서비스(CPC 91136)
	의무의 유형	: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할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인도네시아 회사와의 협력. 그리고</p> <p>나. 합작투자, 공동 운영 및 계약 경영이 요구된다.</p>

73	분야	: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 서비스(시청각 서비스는 제외한다)
	하위 분야	:	극장 및 오페라하우스(CPC 96193)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외국인이 소유하는 지분참여는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74	분야	: 레크리에이션 · 문화 · 스포츠 서비스(시청각 서비스는 제외한다)
	하위 분야	: 보석류 박물관으로 제한되는 박물관 서비스(CPC 96321)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1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외국인이 소유하는 지분참여가 51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가 5 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합작투자 형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75	분야	: 레크리에이션 · 문화 · 스포츠 서비스(시청각 서비스는 제외한다)
	하위 분야	: 관광 리조트 내 골프장 및 그 밖의 시설(CPC 96413)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할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특정 주 또는 지역에서의 서비스의 공급은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한다. 그리고  나.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는 지분참여의 51 퍼센트를 소유한다.

76	분야	: 레크리에이션 · 문화 · 스포츠 서비스(시청각 서비스는 제외한다)
	하위 분야	: 해상 리조트 설비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77	분야	:	레크리에이션 · 문화 · 스포츠 서비스(시청각 서비스는 제외한다)
	하위 분야	:	호텔 경영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78	분야	: 운송 서비스 해상 운송 서비스
	하위 분야	: 자바 동부 및 인도네시아 동부에서 선박분류기준이 10,000 톤(GT) 이상인 선박으로 한정되는 선박 유지 및 보수(CPC 8868**)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1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허가 요건은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 가능한 요건과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나. 선박분류기준이 50,000 재화중량톤수(DWT) 이상인 선박으로 한정한다.

79	분야	:	운송 서비스 해상 운송 서비스
	하위 분야	:	해상 운송을 위한 예선 서비스(CPC 7214)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1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고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허가 요건이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 가능한 요건과 다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80	분야	:	운송 서비스 해상 운송 서비스
	하위 분야	:	선박 구조 및 인양 서비스(CPC 7454)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고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허가 요건이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 가능한 요건과 다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81	분야	:	운송 서비스 해상 운송 서비스
	하위 분야	:	여객 운송(CPC 7221)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82	분야	: 운송 서비스 내륙 수로 운송
	하위 분야	: 자바 동부 및 인도네시아 동부에서 선박분류기준이 10,000 톤(GT) 이상인 선박으로 한정하는 선박 유지 및 보수(내륙 수로)(CPC 8868**)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1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허가 요건은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 가능한 요건과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나.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는 자바 동부 및 인도네시아 동부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허용된다.

83	분야	: 운송 서비스 해상 운송 서비스
	하위 분야	: 해상 화물 취급 서비스로 한정하는 컨테이너 취급 서비스(CPC 7411)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1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외국인이 소유하는 지분참여는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으며 49퍼센트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통하고 나머지 비율은 국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그 밖의 메커니즘을 통한다.  나.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허가 요건은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 가능한 요건과 다를 수 있다.  다.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는 탄중 프리옥, 탄중 페락, 벨라완, 세마랑 및 마카사르 같은 주요 항구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리고  라. 국제 해운을 위하여 개방된 항구의 항만 시설에 대한 접근 및 그 사용이 허용된다.

84	분야	:	운송 서비스
	하위 분야	:	가.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나. 컴퓨터 예약 시스템(CRS) 다. 판매 및 마케팅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85	분야	:	운송 서비스
	하위 분야	:	도로 화물 운송(CPC 7123)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 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고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허가 요건이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 가능한 요건과 다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86	분야	: 운송 서비스 도로 운송 서비스
	하위 분야	: 오토바이를 제외한 도로 운송 장비의 유지 및 보수(CPC 8867)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1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체를 통한 공급이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외국인이 소유하는 지분참여는 3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나.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는 그 현지 그룹 회사를 포함하여 자동차의 유지 및 보수에 관련된 제조 활동을 인도네시아에서 한다. 그리고  다.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허가 요건은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 가능한 요건과 다를 수 있다.

87	분야	: 운송 서비스
	하위 분야	: 도로 운송 지원 서비스(CPC 744)  가. 화장실 나. 레스토랑 다. 통신 시설 라. 차량 승무원을 위한 휴식 정차 시설 마. 대기 및 소음 공해 저감 시설 바. 대기질 및 배출 모니터링 시설 사. 청소 시설 아. 일반 차량 정비 시설 자. 교환 시설 차. 복합쇼핑몰 카. 일반 숙박 및 화물 터미널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고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허가 요건이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 가능한 요건과 다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88	분야	:	운송 서비스
	하위 분야	:	해상화물운송주선 서비스(CPC 7480**)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1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고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허가 요건이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 가능한 요건과 다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89	분야	:	운송 서비스
	하위 분야	:	고속도로 서비스로 제한되는 고속도로, 교량 및 터널 운영 서비스(CPC 74420)로 한정하는 도로 운송 지원 서비스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1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고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허가 요건이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 가능한 요건과 다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90	분야	:	운송 서비스
	하위 분야	:	항만구역 및 제 1 구역 외의 저장 및 창고 서비스 가. 냉동 또는 냉장 상품의 저장 서비스(CPC 7421) 나. 그 밖의 저장 또는 창고 서비스(CPC 7429)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1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외국인이 소유하는 지분참여의 3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고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허가 요건이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 가능한 요건과 다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91	분야	: 그 밖의 서비스
	하위 분야	: 동위원소 분석으로 한정하는 코어 분석 및 그 밖의 연구 실험 가. 인도네시아 에너지 서비스 분류 제안서에 따라 다음에 해당한다: 동위원소 분석(1A.2.7.3)  나. W 120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한다: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에 관한 사업 서비스(CPC 8676)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체를 통한 공급이 인도네시아에서의 대표 사무소를 통한 공동 운영 형태일 것을 요구하고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허가 요건이 인도네시아인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 가능한 요건과 다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92	분야	:	그 밖의 서비스
	하위 분야	:	<p>석탄으로 한정하는 액화 및 기화</p> <p>가. 인도네시아 에너지 서비스 분류 제안서에 따라 다음에 해당한다.</p> <p>1) 석탄 액화(2.4.4.4)</p> <p>2) 석탄 기화(2.4.4.5)</p> <p>나. W 120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한다: 제조업 부수 서비스(CPC 884)</p>
	의무의 유형	:	<p>내국민 대우(제 8.4 조)</p> <p>시장접근(제 8.5 조)</p>
	유보내용	:	<p><u>서비스 무역</u></p> <p>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93	분야	:	그 밖의 서비스
	하위 분야	:	플랫폼 건설 및 연안 파이프라인 설치로 제한되는 엔지니어링, 조달 및 건설(EPC) 서비스 가. 인도네시아 에너지 서비스 분류 제안서에 따라 다음에 해당한다: 엔지니어링, 조달 및 건설(EPC) 서비스(1A.3.2.2.) 나. W 120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한다: 산업 공정 및 생산을 위한 엔지니어링 설계 서비스(CPC 86725)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인도네시아에서의 대표 사무소를 통한 공동 운영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94	분야	:	그 밖의 서비스
	하위 분야	:	SPA 서비스로 한정되는 그 밖의 보건의료 서비스(CPC 93199)
	의무의 유형	:	내국민 대우(제 8.4 조) 시장접근(제 8.5 조)
	유보내용	:	<u>서비스 무역</u>  인도네시아는 제 8.1 조(정의)러호 3 목에 정의된 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공급이 합작투자 형태일 것을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 부록

### 금융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 인도네시아

## 주해

1. 이 부록의 목적상, “(1),” “(2)” 및 “(3)”의 사용은 각각 국경 간 공급, 해외 소비 및 상업적 주제를 지칭한다.
2. 이 부록의 목적상,
  - 가. “제한 없음”이란 목록 나의 유보항목 4부터 9까지, 비은행 금융 서비스 하위 분야에 관한 일반 조건 및 은행 서비스 하위 분야에 관한 일반 조건에 열거된 것 외에 추가적인 조건 및 제한이 없음을 말한다.
  - 나. “약속 안함”이란 약속이 없음을 말한다.
  - 다. “비은행 금융 서비스 하위 분야에 관한 일반 조건” 및 “은행 서비스 하위 분야에 관한 일반 조건”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관련 하위 분야의 약속에 각각 적용된다.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비은행 금융 서비스 하위 분야			
<p>비은행 금융 서비스 하위 분야에 관한 일반 조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목록 나의 유보항목 4 에 명시된 합작투자에 대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비은행 금융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의 지분 보유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일반적인 법과 규정에 따름. 소유조건 및 지분보유비율은 비은행 금융 서비스 내 기존의 개별 합작투자 설립 시에 작성된 각 주주약정에 명시된 대로 존중됨. 관련 합작투자에서 모든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소유권이 양도되지 않음.</li> <li>2. 외국인 투자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비은행 금융 서비스회사의 지분을 100 퍼센트 소유할 수 있음.</li> <li>3. 모든 합작투자회사는 그들의 피고용인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함.</li> </ol>			
<p>a) 생명 보험 서비스(CPC 812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약속 안함.</li> <li>(2)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대상 객체의 보험 리스크를 다룰 수 있는 개인 보험 또는 단체 보험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li> <li>(b) 대상 객체의 보험</li> </ol> </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약속 안함.</li> <li>(2) 약속 안함.</li> </ol>	

적용을 이행하고자  
하는 보험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b) CPC 81293(해양, 항공 및 그 밖의 운송)을 제외한 비생명 보험 서비스(CPC 8129)</p>	<p>(1) 약속 안함.</p> <p>(2)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p> <p>(a) 대상 객체 보험 리스크를 다룰 수 있는 개인 보험 또는 단체 보험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p> <p>(b) 대상 객체의 보험 적용을 이행하고자 하는 보험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p> <p>(3) 제한 없음.</p>	<p>(1) 약속 안함.</p> <p>(2) 약속 안함.</p> <p>(3) 제한 없음.</p>	
<p>c) 재보험 서비스</p>	<p>(1) 그 밖의 당사자들의 재보험 서비스 공급자는</p>	<p>(1) 제한 없음.</p>	

	<p>스탠다드 앤드 푸어 사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기관에서 BBB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함.</p> <p>(2) 그 밖의 당사자들의 재보험 서비스 공급자는 스탠다드 앤드 푸어 사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기관에서 BBB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함.</p> <p>(3) 제한 없음.</p>	<p>(2) 약속 안함.</p> <p>(3) 제한 없음.</p>	
--	---	-------------------------------------	--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보험 중개 서비스(CPC 81401)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e) 재보험 중개 서비스(CPC 8140)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f) 다음으로 한정하는 소비자대출, 주택담보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용자를 포함하는 모든 유형의 여신(CPC 8113)  - 팩토링 서비스 - 신용카드업무(신용카드 발급 및 대행) - 소비자 금융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금융 리스 서비스(CPC 81120)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h) 다음으로 한정하는 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자기 계좌 또는 고객 계좌로 거래하는 증권업무 - 상장 지분 - 채권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상업적 주재는 증권중개업자로 면허를 받은 증권회사의 설립을 통해서만 허용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i) 주간사로서 인수 및 모집을 포함한 증권 발행 참여(공모 또는 사모)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상업적 주재는 증권인수업자로 면허를 받은 증권회사의 설립을 통해서만 허용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트폴리오 운용<sup>19</sup>, 모든 유형의 집단투자운용</li> <li>- 투자기금관리로 제한되는 자산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약속 안함.</li> <li>(2) 제한 없음.</li> <li>(3) 상업적 주재는 투자운용사로 면허를 받은 증권회사의 설립을 통해서만 허용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약속 안함.</li> <li>(2) 제한 없음.</li> <li>(3) 제한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j)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문으로 한정하는 투자자문 서비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약속 안함.</li> <li>(2) 제한 없음.</li> <li>(3) 상업적 주재는 투자자문회사의 설립을 통해서만 허용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약속 안함.</li> <li>(2) 제한 없음.</li> <li>(3) 제한 없음.</li> </ul>	

<sup>19</sup> 포트폴리오 운용은 시행 중인 자본시장에 관한 법과 규정에 규정된 대로 모든 유형의 집합투자운용이다.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은행 서비스 하위 분야			
<p>은행 서비스 하위 분야에 관한 일반 조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 은행의 기존 지점은 예외로 하고, 외국인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요건에 따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설립된 합작투자은행 형태를 갖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신규 면허에 대하여 약속 안함.</li> <li>나. 금융기관으로 한정하여 합작투자은행의 설립이 허용됨.</li> </ul> </li> <li>2. 소유조건 및 소유지분비율은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 및 그들 각자의 인도네시아 파트너의 소유권에 대한 근거로서 기존의 개별 합작투자은행 설립시에 작성된 각 주주약정에 명시된 대로 존중됨. 그 합작투자은행 내 모든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소유권이 양도되지 않음.</li> <li>3. 기존 현지 은행의 인수는 증권 거래소에서 지분 매수를 통하여 허용되며,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현지 은행 지분의 51 퍼센트까지 허용됨.</li> <li>4. 외국 은행 및 합작투자은행은 자카르타, 수라바야, 세마랑, 반둥, 메단, 마카사르, 덴파사르, 바탐, 파당, 마나도, 암본, 발릭파판, 반다아체, 그리고 자야푸라 시에 사무실을 개업할 수 있음.</li> <li>5. 인은 하나의 은행에서만 "지배 주주"가 됨.               <p>정의:</p> <p>지배 주주란 은행 지분의 10 퍼센트 이상을 수익성 있게 소유한 인 또는 은행 지분의 10 퍼센트 미만을 수익성 있게 소유했으나 그 은행에 대하여 지배권을 갖는 인을 말함. 그러한 은행의 이사 및/또는 감독관을 임명할 권한 및/또는 은행의 행위에 대한 지시 권한을 갖는 인은 은행 지배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됨.</p> </li> </ol>			

공급 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상업 은행 업무</b>			
<p>a)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p> <p>b) 소비자대출, 주택담보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용자를 포함하는 모든 유형의 여신</p> <p>c) 신용, 선불 및 직불 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p> <p>d) 보증 및 약정</p> <p>e)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 계좌 또는 고객 계좌로 거래하는 것</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a) 외국 은행 출장소에는 2 개의 영업소와 2 개의 보조 사무소만 약속함.</p> <p>(b) 합작투자은행에는 2 개의 지점과 2 개의 영업소만 약속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a) 외국 은행 지점의 경우,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임원이 인도네시아 국민이라는 제한을 두고, 국외 거주자는 임원직만을 맡을 수 있음.</p> <p>(b) 국외거주자 이사는 외국 지분참여에 비례하여 합작투자은행에 취임할 수 있음.</p>	

- 화폐시장 상품(수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함)
  - 외환
  - 스왑, 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 화폐시장에서  
발행되는 양도성 증권
- f) 현금 운용, 보관 및 예탁  
서비스